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실

법제처는 2008년부터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http://easylaw.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부 각 기관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간의 관계를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고,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쓰인 어려운 법령 내용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쉽게 해설하여 제공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에서는 **2024년 5월 현재 서술형 270건, 사례형 18건 등 총 288건의 생활법령 콘텐츠를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코너에서는 최근 이슈가 되는 주제와 관련하여 알아두면 좋은 법령정보를 질문과 답변의 형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서비스(웹페이지: <http://easylaw.go.kr>. 모바일앱: Smart 생활법률)』에 접속하셔서 ‘백문백답’ 등을 통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해외직구

01

Q | 해외직구로 옷을 사려고 하는데 개인 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개인 통관고유부호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A |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하며,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 시스템(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 “개인 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 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 체계에 따라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30호, 2023. 4. 12. 발령, 2023. 4. 18. 시행) 제2조제3호].
- 개인 통관고유부호는 수입신고(일반통관)시 기재해야 하며, 미화 150달러 이하 물품의 목록통관인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제1호, 제7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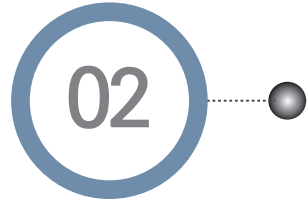


● 개인 통관고유부호 체계

1. 개인 통관고유부호 구성체계(예)
- | | | | |
|----|------|-----------|-------------|
| P | H | 123456789 | 9 |
| 개인 | 발급년도 | 부여부호 | 오류검증
부 호 |
2. 개인
모든 개인통관고유부호에 P를 기재한다.
3. 발급년도
부호를 발급한 연도중 끝 2자리를 기재한다.
예) 2011년 ⇒ 11
4. 부여번호
무작위로 9자리 숫자를 부여한다.
5. 오류검증부호
부호 부여나 입력의 오류를 체크하기 위하여 1자리 숫자를 부여한다.
<출처: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표 2 참조>

● 개인 통관고유부호 신청방법

-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신규 신청하려는 자는 인터넷 개인 통관고유부호 발급시스템(unipass.customs.go.kr)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부세관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 및 별지 제4호서식).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 만료 전의 여권, 장애인 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중의 어느 하나를 말함) 사본. 다만,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는 청소년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사본
- 대리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별지 제9호서식)



Q | 처음으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직구로 구매할 수 없는 제품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을 구매하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A | 해외직구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은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구매가 제한 또는 금지되는 물품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직구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표적인 물품은 「관세법」, 「식물방역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수산물 질병 관리법」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 금지 또는 제한되는 대표적인 품목

- 「관세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관세법」 제234조 참조)
 1.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간행물·도화, 영화·음반·비디오물·조각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품
 2. 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3. 화폐·채권이나 그 밖의 유가증권의 위조품·변조품 또는 모조품
- 「식물방역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참조)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함)한 식물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으로 정하는 것
 2. 병해충(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함)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에 규정된 물품 등의 용기·포장

-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제1항 참조)
 1.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 별표의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수입금지지역 및 수입위생 조건이 없는 지정검역물의 적용범위와 수입 조건」 제2조제1호)
 2. 동물의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
 3.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4. 특정위험물질
- 「수산물질병 관리법」상 수입이 금지되는 물품(「수산물질병 관리법」 제24조제1항 본문 참조)
 1.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수입금지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항공기 또는 선박의 단순 기항에 따라 수입금지 지역을 거친 경우는 제외함)
 2. 수산물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된 수산물
 3.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식이 제한·금지된 수산물과 이식승인의 대상임에도 이식승인을 받지 않은 수산물

※ 영양제 및 반려동물 관련 제품은 수입금지 품목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해당 상품군 구매 시 성분 확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외직구 시 확인해야 할 위해식품 차단목록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foodsafetykorea.go.kr), 위해예방-해외직구정보-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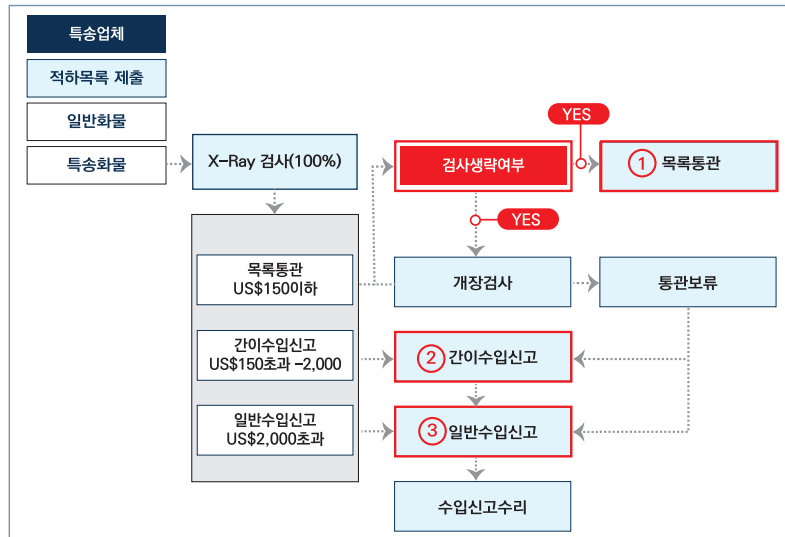
Q | 며칠 전 해외직구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면서 특송업체를 통해 배송을 받는 것으로 주문을 하였습니다. 특송통관은 무엇이며, 통관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직구는 운송방법에 따라 통관절차가 다릅니다. 특송업체가 운송 반입하는 경우 특송통관절차가 적용됩니다.

● 특송통관절차

- “특송통관”이란 휴대품·택송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하는 절차를 말합니다(「관세법」 제254조의2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제1항).
 -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 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참조.

〈특송물품의 통관절차〉



● 특송물품의 통관방식

①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 등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특송물품의 통관제도입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달러 이하(미국은 200달러)의 물품 중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4항 및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수출입 통관-특송물품 통관 참조).

② 간이수입신고

- “간이수입신고”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해당 물품의 총 가격이 미화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면세대상물품은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에 수입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는 간이신고로 통관할 수 있습니다(「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3-38호, 2023. 5. 3. 발령·시행) 제71조제1항제1호).

③ 일반수입신고

- 미화 2,000달러를 초과하거나, 위의 목록통관 또는 간이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1항).

04

Q | 6개월 전 직접 사용하려고 해외직구로 향수를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금액은 130달러였고,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향수 재판매가 가능한가요?

A | 안됩니다. 소액물품을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물품 등의 면세

-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관세법」 제30조제1항 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함)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4조제4호, 제241조제2항제3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7조 및 별표 11).

● 자가사용 위반 시 제재

- 소액물품 자가사용목적으로 신고하여 면세를 받고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 한 경우에는 다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밀수출입죄 :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제2항), 입항전수입신고(「관세법」 제244조제1항)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69조제2항제2호).

- 관세포탈죄 : 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또는 입항전수입신고를 한 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관세법」 제270조제1항 본문).

-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구매대행업자를 포함함)
-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한 자
- ✓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하여 수입한 자

05

Q | 몇 달 전, 해외직구로 TV를 구매하여 관세납부 후 물건을 받았는데요. 제품에 문제가 있어 해당 사이트에 문의하였더니 반품 및 환불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 | 네.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

-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습니다(「관세법」 제106조의2제1항 전단).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 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반품환급신청 제출서류

- 반품환급신청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customs.go.kr), 관세행정-개인통관-해외직구물품
관세 환급 참조.

구 분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초과 물품	수출신고가격 200만원 이하 물품
공통 서류	1. 환급신청서 2. 수입신고필증	
제출 서류	3. 수출신고필증	3. 물품 송품장 4. 판매자의 반품 확인서류 5. 환불 영수자료

● 관세환급 신청절차

- ① 쇼핑물 환불 요청 및 서류 준비
 - 쇼핑물 환불 승인 후, 관세사에 요청하여 수입신고필증 확보(반품승인 메일, 수출인보이스, 반품사유서 작성)
- ② 사용자 등록 후 신고인 부호 발급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customs.go.kr)에서 사용자 등록 후 세관을 방문하여 개인 신고인 부호 발급(신분증 지참, 가까운 세관 방문)
- ③ 수출신고서 작성 후 세관 방문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customs.go.kr)을 이용하여 수출신고서 작성 후 수출 서류 제출 및 물품검사를 위해 세관 방문(반품할 물품을 지참하여 방문)
- ④ 우체국 방문하여 물품 발송
 - 세관 수출신고서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출력본 필요. 우체국 EMS 발송 (무게·부피에 따라 비용이 결정됨)

⑤ 환급신청서 작성

- 관세청 인터넷 통관포털(unipass.customs.go.kr)이용 작성 후 세관 방문
 - ✓ “과오납 및 계약상이 환급신청서” 작성
 - ✓ 첨부서류: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 통장사본

⑥ 환불 및 세금 환급 확인

- 쇼핑물 제품 수령 후 환불, 세관 관세 환급
 - ✓ 물품구입대금: 신용카드, 페이팔 등 최초 결제수단으로 환불
 - ✓ 물품구입대금: 신용카드, 페이팔 등 최초 결제수단으로 환불

<출처: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crossborder.kca.go.kr), 해외직구 반품 가이드 참조>